

2026년 제1회 (재)화성시문화관광재단 직원 채용

최종합격자 공고

2026년 제1회 (재)화성시문화관광재단 직원 채용 최종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

2026. 3. 17.

재단법인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



최종합격자 명단

채용구분	채용분야	채용직급	합격인원	합격자명단 (응시번호)			
계			17명	-			
공개경쟁	문화예술	공무직	4명	1-00121	1-00169	1-00324	1-00340
	하우스매니저		1명	2-00015			
	주차관리		1명	3-00008			
제한경쟁	문화예술(장애인)		1명	14-00003			
	도서관(보훈)		1명	15-00001			
공개경쟁	문화예술A	기간제근로자	1명	4-00012			
	문화예술B		1명	5-00013			
	문화예술C		1명	6-00030			
	문화예술D		1명	7-00008			
	문화예술E		-	-			
	도서관A		1명	9-00003			
	도서관B		1명	10-00001			
	도서관C		1명	11-00002			
	도서관D		1명	12-00003			
	도서관E		1명	13-00004			



예비합격자 명단

채용구분	채용분야	채용직급	예비합격자명단 (응시번호)	예비순위
계				-
공개경쟁	문화예술	공무직	1-00190	예비1순위
			1-00110	예비2순위
			1-00111	예비3순위
			1-00182	예비4순위
			1-00330	예비5순위
	하우스매니저		2-00008	예비1순위
			2-00002	예비2순위
공개경쟁	문화예술A	기간제근로자	4-00011	예비1순위
			4-00010	예비2순위
	문화예술B		5-00007	예비1순위
	문화예술C		6-00007	예비1순위
			6-00021	예비2순위
	문화예술D		7-00004	예비1순위
			7-00018	예비2순위
	도서관A		9-00005	예비1순위
			9-00006	예비2순위
			10-00002	예비1순위
	도서관B		10-00003	예비2순위
			11-00001	예비1순위
	도서관C		11-00004	예비2순위
			12-00001	예비1순위
	도서관D		13-00001	예비1순위
도서관E	예비1순위			

※ 예비합격자 명단의 유효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함



임용후보자 등록 및 임용

■ 등록기간 : 2026. 3. 17.(화) ~ 2026. 3. 19.(목) 18:00시 까지

■ 등록장소 : (재)화성시문화관광재단 경영기획본부 경영지원팀

[※ 경기도 화성시 동탄구 노작로 134 동탄복합문화센터 3층]

■ 등록방법 : 방문제출

■ 제출서류

- ▶ 임용후보자 등록원서 1부
- ▶ 신원진술서 1부
- ▶ 주민등록초본 1부(※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)
- ▶ 가산점수 증빙서류 1부(※ 해당자에 한함)
- ▶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(※ 해당자에 한함)
- ▶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
- ▶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
- ▶ 응시자격 결격사유 서약서 1부
- ▶ 공정채용 확인서 1부
- ▶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(확인서) 1부
- ▶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1부
- ▶ 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동의서 1부
- ▶ 채용비위 관련 확인서 1부
- ▶ 통장사본 1부
- ▶ 증명사진(3.5×4.5cm) 2매 및 이미지 파일(JPEG, PNG 등)

※ 증명사진 이미지 파일은 recruit@hcf.or.kr로 송부

○ 임용예정일 : 2026. 3. 30.(월)



기타사항

- 최종합격자는 등록기한 내 임용구비서류를 갖추어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여야 하며, 기일 내에 임용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임용대상자 등록 후 특별한 사유 없이 임용일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방문하지 않을 때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임용에서 제외됩니다.
- 추후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에서 제외됩니다.
- 제출서류는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채용서류반환 :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 가능(※ 임용 확정자 제외)

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

-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(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)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.
-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.
-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.
-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. 다만,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-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.



문 의 : (재)화성시문화관광재단 경영지원팀 031-8015-8126